

순천대학교 연구교수규정

제정 1994. 2. 1.
개정 2002. 12. 31.
전부개정 2014. 3. 27.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순천대학교(이하 “이 대학교”라 한다) 교육공무원의 연구교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 “연구교수”라 함은 고등교육법 제17조 및 이 대학교 학칙 제8조의 2에 의거 강의를 하지 않고 연구에만 전념할 수 있는 교수를 말하며, 국내연구교수와 국외연구교수로 구분한다.

② “국내연구교수”란 동조 제1항의 목적으로 이 대학이나 국내대학, 국내연구소 또는 국내산업체에서 연구에 전념하는 교수를 말한다.

③ “국외연구교수”란 동조 제1항의 목적으로 해외파견 승인을 받고 국외 대학 또는 국외연구소에서 연구에 전념하는 교수를 말한다.

제3조(자격) 연구교수가 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이 대학교 전임교원으로서 국내연구교수는 10년(단, 대학 및 산업체 파견은 5년), 국외연구교수는 3년 이상 재직 중인 사람
2. 강의 면제기간이 1개 학기인 경우 3년, 2개 학기인 경우 5년, 3개 학기인 경우 7년, 4개 학기인 경우 9년이 경과한 사람(다만, 휴직기간은 강의면제 경력 및 경과기간에서 제외)
3. 이임 후 1년 이내에 연구교수를 신청한 이 대학교 총장

제4조(기간) 연구교수기간은 국내·외 1년 이내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연구 특성상 필요한 경우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총장의 승인을 받아 허가할 수 있다.

제5조(선발인원) ① 연구교수 선발 인원은 연구교수 선발 공고 시를 기준으로 이 대학교 총 재직 교원의 10퍼센트 이내로 한다.

② 국내·외 연구교수의 비율은 연구교수 선발 공고 시 별도로 정한다.

③ 제3조 제3호의 인원은 제5조의 연구교수 선발 인원에 포함하지 않는다.

제6조(선발절차) ① 연구교수를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연구교수지원신청서 등 관계서류를 소속 학부(과)장을 경유하여 소속 단과대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연구교수는 소속 단과대학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중에서 산학협력단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선발한다. 다만, 전임 총장이 이임 후 1년 이내에 연구교수를 신청한 경우에는 심의 없이 선발할 수 있다.

③ 평가항목 및 배점, 신청 서류 등 선발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7조(연구계획의 변경 및 조기귀국) ① 국내연구교수가 연구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연구종료 3개월 이전에 국내 연구계획 변경보고서(별지 서식 1)를 제출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국외연구교수가 연구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연구개시 30일 이전에 연구계획 변경보고서(별지 서식 1)를 제출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국외연구교수의 조기귀국사유가 발생한 경우 즉시 조기귀국사유서를 소속 기관장에게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조기귀국하였을 경우에는 지급금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납조치 할 수 있다. 반납금액의 산출은 월할 계산법에 따른다.

제8조(선발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교원은 연구교수 선발에서 제외한다.

1. 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에 국가공무원법 및 교육공무원법에 의하여 징계 처분을 받은 사람
2. 개인별 연구교수 총 선정 횟수 5회, 총 연구기간 5년을 초과한 사람
3. 최근 2개 학기의 평균 강의시간이 주당 교수시간에 미달되는 사람
4. 산학협력단 해외파견·연구교수 지원사업 지침 자격제한에 해당하는 사람

제9조(복무) ① 연구교수는 연구계획서에 따라 연구에 전념하여야 한다. 다만, 국내연구교수의 경우 총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교과운영상 부득이한 경우 강의 담당
2. 이 대학교 연구소 또는 특별사업단의 업무 수행
3. 국내의 이 대학교 이외의 대학 또는 연구소에서의 연구 수행

② 연구교수는 연구 종료 후 3년 이상 이 대학교에 근무하여야 한다.(단, 3년 이내에 타기관으로 진출시 연구비를 반환하여야 함)

제10조(보고서 제출) ① 연구교수는 연구결과보고서(별지 서식2)를 연구기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연구결과 발표물을 다음과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1. 발표학술지가 국내학술지인 경우 : 연구종료 후 1년 이내
2. 발표학술지가 국외학술지인 경우 : 연구종료 후 2년 이내

② 제10조제1항에 의한 실적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연구결과물 제출기간 종료 후 5년 동안 교내연구비 수주 및 연구교수 선발이 제한되며, 연구기간 중 소요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제11조(연구비) 연구교수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연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 칙(2014. 3. 27.)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규정 공포 이전에 선정된 연구교수의 연구수행은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제7조 별지 제1호 서식]

20 년도 순천대학교

국내연구

국외연구

연구계획 변경 승인 신청서

신청인의 소속		직급		성명	
당초 계획					
변경 사항					
변경 사유					
경비 내역					
위와 같이 연구 계획을 변경하고자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 청 인 (인)					
순천대학교 총장 귀하					
추천인의 의견 :					
.					
대 학 장 (직인)					
순천대학교 총장 귀하					

※ 작성요령

- (1) 연구과제, 연구기간, 연구책임자중 변경할 사항만 기재한다.
- (2) 변경사유는 구체적으로 작성하되 기재란이 부족시에는 별지를 사용하여야 한다.

[제10조 별지 제2호 서식]

20 년도 순천대학교

국내연구교수

국외연구교수

연구결과보고서

소 속			연 구 과 제 명		
성 명	(인)				
연구책임자 및분담내역					
연구 계획 개 요					
연구 결과 개 요					
연구결과 의 활용 방안	학 술 면				
	경 제 생 산 면				
연 구 비 사용 내역	연구비 사용금액 :		집행잔액 :		
발 표	학술지명 :	참고 및 건의 사항			평 가 란
	발간일자 :				
	권(호)수 :				
	면 수 :				

※ 기재 유의사항

1. 연구결과 개요란은 간략히 기술
2. 평가란은 기입치 말고 기재란 부족시 별지 사용 첨부